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3호로 2021년 7월 13일 유승용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제4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2021.5.18. 제정, 2021.11.19. 시행)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커졌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득이한 대면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21년 8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2개 자치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종사자법)」(2021.5.18. 제정, 2021.11.19. 시행)을 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과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였음.

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 시행) 제9조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부합됨.

○ 검토결과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 업종 지정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

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노동업무 관련 국장

5. 노동인권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6.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